

## 절차상의 보호조치 통지서 2016년 8월

DoDEA(Department of Defense Education Activity)의 사명은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DoDEA는 균등하게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독려되는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학생이자 건실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DoDEA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은 학생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거하여 해당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특수교육법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는 적절한 특수 공립교육)를 제공 받습니다. 본 절차상의 보호조치 통지서는 학부모가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호조치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모국어로 작성된 통지서를 받으려면 해당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장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단, 수용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 소개

본 문서에서는 3~21세까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수 교육과 관련된 교육적 권리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본 통지서는 2015년 6월 17일에 제정된 DoD 지침 1342.12, “적격한 DoD 의존자에 대한 조기 중재 및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조항”에 명시된 대로 절차상의 보호조치를 제공합니다.

본 절차상의 보호조치 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시점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연 1회
- 특수 교육 평가 또는 학부모의 평가 요청에 대한 초기 제출 시
- 적법한 절차에 따른 최초 불만 사항 접수 시
-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학생의 제적을 결정한 일자(제적으로 학생의 학년 배정이 변경되는 경우)
- 학부모의 요청 시

### 추가 정보

DoDEA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2015년 6월 17일에 제정된 DoD(국방부) 지침서 1342.12, “적격한 DoD 의존자에 대한 조기 중재 및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조항”에 따라 제공됩니다. 본 지침서의 사본을 다음 웹 주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dodea.edu/Curriculum/specialEduc/pubs.cfm>

DoDEA CSC(사례 연구 위원회)는 특수 교육 전문가, 일반 교육 전문가, 관련 서비스 담당자, 행정 담당자 및 학부모로 구성된 다분야 팀을 지칭합니다. CSC의 필수 구성은 수행해야 할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CSC는 DoD 지침 1342.12(상기 참조)에 따라 적격한 장애가 있는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과 학교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관장합니다. 자녀의 학교 CSC 위원회에 대한 추가 정보는 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는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위치입니다. 자녀의 담당 선생님과 학교 행정 담당자가 질문에 답변하고 학부모의 우려를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군의 특수 교육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군 특수 교육 ISS(교육 훈련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담당자는 해당 지역의 학군 감독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 참여

학부모는 CSC 회의에 참석하여 자녀가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초기 자격 또는 지속적인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거나, 자녀의 IEP(개별화 교육 프로그램)를 준비 또는 변경하거나, 자녀의 반 배정을 결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전화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서면으로 알렸는데도 학부모가 참석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반 배정 결정은 학부모의 참석 없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사전 서면 통지서

귀 자녀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학부모는 DoDEA에서 특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적절한 시간 내에 "PWN"(사전 서면 통지서)을 서면으로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은 PWN을 보내야 하는 활동 또는 작업 목록입니다.

- CSC에서 자녀에 대한 평가 시작을 제안한 경우(또는 평가 요청을 거부한 경우)
- CSC에서 자녀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또는 자녀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 CSC에서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반 배정에 대한 변경을 제안한 경우(예: 최초 IEP 또는 기존 IEP에 대한 변경)(또는 자녀의 프로그램/반 배정에 대한 변경 요청을 거부한 경우)

PWN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DEA에서 제안 또는 거부한 조치에 대한 설명
- DoDEA가 조치를 제안 또는 거부한 이유에 대한 설명
- DoDEA의 제안 또는 거부에 대한 토대로 사용되는 정보 또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
- DoDEA에서 고려했으나 거부한 다른 옵션에 대한 설명과 해당 옵션이 거부된 이유에 대한 설명
- DoDEA의 결정과 관련된 기타 요인에 대한 설명
- 절차상의 보호조치 서술문과 절차상의 보호조치 사본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
- 학부모의 권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연락처
- 중재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분쟁 해결 절차, 불만 사항 신고 방법, 적법한 이의제기 심의회 절차 및 적절한 일정

### 학부모 동의

학교 담당자가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서비스를 전달할 때 취하게 되는 다양한 조치에는 학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DoDEA에는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 활동에

대해 학부모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국어로 작성된 학부모 동의 통지서를 받으려면 해당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장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단, 수용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 동의 필요

### 특수 교육 자격을 얻기 위한 첫 번째(최초) 평가

DoDEA는 자녀의 최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부모가 절차에 대해 우려되는 점 또는 궁금한 점이 있어 동의하기 꺼려지는 경우, 절차에 응답하거나 참여하지 못한 경우 또는 궁극적으로 최초 평가에 대한 동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DoDEA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학부모와 협력하여 궁금한 점 및 우려되는 점을 해결합니다.
- 자녀의 교육 진행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학부모의 협력에 기초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또한 의심되는 장애의 영향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 진행 과정이 방해 받는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DoDEA는 공식적인 분쟁 해결(즉,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 절차)을 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학부모가 최초 평가에 대한 동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DoDEA는 미아 보호, 최초 평가 또는 평가 절차를 따를 의무 혹은 자격 결정 및 IEP 작성 의무를 수행할 필요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 특수 교육의 초기 배정(서비스 제공)

최초 평가 완료 후 자녀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IEP 개발에 참여하도록 요청됩니다. IEP는 자녀의 필요 그리고 해당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시될 서비스를 파악합니다. 최초 IEP의 경우 DoDEA가 자녀를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하고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학부모가 사전에 공지된 서면 동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IEP에 서명하면 IEP에 명시된 시작 날짜에 맞춰 자녀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학부모가 서비스에 대한 최초 동의를 거부한 경우 DoDEA는 학부모 동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되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학생에 대해 FAPE를 제공해야 할 필요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 재평가

자녀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게 되면 교육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학생의 진행 상황 및 필요를 반영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포괄적인 재평가는 최소한 3년에 한 번(즉, 3년마다 재평가 및 검토 실시) 수행되어야 하지만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평가 날짜 이전에 자녀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업데이트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당겨 수행될 수 있습니다.

재평가 절차는 자녀가 계속해서 특수 지침 및 특수 교육 배정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절차에는 공식적인 테스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SC가 3년마다 실시되는 검토에 공식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부모가 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에도 DoDEA는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학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CSC는 학부모 동의를 얻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기록해야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재평가에 대한 학부모 동의가 필요 없을 때 평가를 진행합니다.

CSC가 3년마다 실시되는 검토에 공식적인 테스트가 필요 없다고 결정한 경우 학부모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이유를 알립니다. 3년마다 업데이트되는 프로파일에서 기타 데이터(예: 서비스 제공업체 보고서, 관찰 내용, 교사가 제공한 정보, 학부모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공식적인 테스트 절차 수행을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CSC는 업데이트된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요청을 존중해 3년마다 실시되는 검토 날짜 이전에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 동의를 필요 없는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부로 기존 정보에 대한 CSC의 검토
- 수업 관찰 수행
- 테스트 실시 이전에 전 학생의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테스트 또는 평가
-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생의 IEP에 대한 평가 절차 수행

### 동의 철회

특수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재평가 또는 배정에 대한 서면 동의를 DoDEA에 제출한 후 학부모는 언제라도 서면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DoDEA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평가 절차 중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동의 취소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평가 활동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미 완료된 재평가 부분은 자녀의 교육 기록에 대해 유효한 부분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 학부모가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취소하면 동의 취소가 접수된 시점에 모든 서비스 및 합의가 종료됩니다. DoDEA는 서비스 중단 전에 학부모에게 PWN을 제공합니다. PWN은 DoDI 1342.12 및 DoDM 1342.12에 따라 DoD에서 시행되는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장애인 교육법)에 근거해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제공되는 보호를 받아야 할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학부모가 특정한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취소하고 학부모와 CSC의 학교측 구성원이 자녀가 해당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 FAPE를 제공 받는 데 동의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외하도록 자녀의 IEP가 수정되고 DoDEA는 PWN을 보냅니다.

- 학부모와 CSC의 학교측 구성원이 자녀가 특정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 FAPE를 제공 받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학부모는 중재 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서비스가 적절한지 여부와 자녀가 FAPE를 받을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 않거나 이러한 판단이 중재 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학교는 특정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 **IEE(독립 교육 평가)**

IEE(독립 교육 평가)는 DoDEA나 EDIS(교육 및 개방 중재 서비스)에 고용되지 않은 유자격 심사관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학부모는 언제든지 IEE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나,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DoDEA 학제 평가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IEE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때 비용은 DoDEA가 부담합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IEE에 대한 서면 요청을 접수하면 DoDEA는 지체 없이 요청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DoDEA 학제 평가에 대해 DoDEA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되는 IEE를 1회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DoDEA는 IEE에 대한 비용 부담에 동의하거나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DoDEA 학제 평가가 적절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적절한 이의제기 심의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DoDEA가 IEE에 대한 비용 부담에 동의하면 적절한 평가의 구성 요소에 대한 담당 기관의 기준을 지정해야 합니다. DoDEA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제공업체를 식별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제시된 제공업체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선정한 제공업체가 담당 기관의 기준을 충족하는 평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DoDEA는 담당 기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IEE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DoDEA가 IEE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 심의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심의회 심리관이 DoDEA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결하면 DoDEA는 IEE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학부모는 자비를 들여 IEE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EE 소견에 대한 고려 사항**

DoDEA 또는 개인(학부모)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행된 IEE는 자녀의 FAPE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시 CSC가 고려합니다. 그러나 CSC는 자녀의 자격, 배정, IEP, 서비스 및 FAPE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타 모든 데이터와 함께 IEE의 결과 및 권장 사항이 고려됩니다. IEE 단독으로는 학생의 교육 관련 결정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

학부모(또는 허가 받은 대리인)는 수정 조항 5 U.S.C. 552a와 DoD 지침서 5400.11-R, “DoD 프라이버시 프로그램” (<http://www.dodea.edu/Curriculum/specialEduc/parentsInfo.cfm>) 에

의해 실시되는 1974년 PA(프라이버시 법)의 요건에 따라 자녀의 학군이나 DoD 시스템에 의해 수집, 관리 또는 사용되는 학생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검사 및/또는 검토할 권한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법이 적용되는 기록은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이름, 개인 식별 번호 또는 기타 개인 식별자(예: 주소 또는 합당하고 확실한 요인으로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로 보관된 기록입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학교에서 관리되는 특수 교육, 등록, 출석, 건강 및 징계 기록을 비롯하여 학생의 기밀 교육 기록이 포함됩니다.

### 기록의 공개

프라이버시 법에 따라 DoDEA 또는 DoD(국방부) 담당자에게 기록을 공개할 때는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DoD 계약의 이행에 사용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DoD 내에서의 공개로 간주됩니다. 학생의 기록을 DoD 외부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3자에게 학부모 동의 없이 기록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예: 프라이버시 법에 따라 공개가 승인된 경우로, 법 집행 담당자에 대한 공개,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공개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 학교 규율 및 임시 대안 교육 시설에 배정

학교의 모든 징계 규칙 및 절차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는 징계 조치 중에도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정한 보호조치 및 절차가 제공됩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일부 학생은 비행이 장애에서 비롯된 징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생의 경우 학습 프로그램에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비행 또는 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 및 지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비행에 연루되면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을 배정에서 제외하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 정학). DoDM 1342.12, 4항 단락 12.b에 따라 학생이 현재 학급 배정에서 출석일 기준 연속 10일 이상 제외되거나 한 학년 동안 모두 최대 10일 제외되고 CSC가 해당 학생이 비행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판명한 경우 해당 배정 제외가 배정의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케이스별로 결정 사항이 달라지고 결정은 심의회 심리관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CSC는 이러한 결정 사항을 근거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학생이 배정 제외 패턴을 구성하는 일련의 배정 제외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a) 학생의 행동이 일련의 배정 제외로 이어진 이전의 사고에서 한 행동과 크게 유사한지 여부
- (b) 각 배정 제외 기간, 총 배정 제외 시간 및 배정 제외 발생 빈도와 같은 추가 요소

배정 제외가 학생의 배정을 변경하는 경우 비행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학생을 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당일 학교는 학부모에게 결정 사항을 알리고 절차상의 보호조치 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배정 변경을 일으킨 배정 제외가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CSC는 회의를 소집해 학생의 비행이 장애의 징후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장애 징후 결정 회의**라고 합니다.

징후 결정 회의에서는 다음을 결정합니다.

- 학생의 행동이 장애로 인한 것이거나 장애와 직접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지 여부
- 학생의 행동이 학교에서 IEP를 이행하지 못한 직접적인 결과인지 여부

장애 징후 결정 회의 중 평가 결과, 학생 관찰 기록, 학부모가 제공한 정보, 학생의 IEP 및 현재 배정을 비롯한 모든 관련 정보가 검토됩니다.

### **자녀의 행동이 장애의 징후가 아닌 경우**

행동이 귀 자녀의 장애를 나타내는 징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비장애 학생에게 적용되는 DoDEA의 징계 절차가 적용되며 여기에는 대안 교육 시설로의 배정이 포함됩니다. 그럴더라도 학교는 계속해서 자녀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자녀의 행동이 장애를 보여주는 징후인 경우**

문제의 행동이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징후로 *판명되면* CSC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고려하여 시작합니다(예: 기능적 행동 평가 수행, 행동 중재 계획 이행 및 필요한 경우 편의시설 또는 IEP의 기타 측면 수정). 학부모와 학교가 배정의 변화에 동의하지 않거나 특수한 환경이 존재하는 경우 "대안 교육 시설" 섹션의 단락 (2)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는 자녀를 제외한 학급 배정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 **자녀의 행동이 IEP 이행 실패의 결과인 경우**

학생의 잘못된 행동이 IEP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로 판명되면 CSC는 학생의 행동/비행을 처리하기 위해 현재 IEP를 검토하여 학생이 제공 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또는 수정을 결정합니다. 학부모와 학교가 배정의 변화에 동의하지 않거나 특수한 환경이 존재하는 경우 "대안 교육 시설" 섹션의 단락 (2)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는 자녀를 제외한 학급 배정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 **AES(대안 교육 시설)**

학교 담당자는 비행에 대한 징계로 장애를 가진 학생을 현재 배정에서 다음 시설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 (1) 적절한 임시 AES(대안 교육 시설), 또 다른 시설 또는 출석일 기준 연속 10일 이하의 정학. 이 정도의 대체 환경은 장애 없는 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예: 수업 시간에서 제외시키고 학교 도서관, 다른 강의실 또는 가정으로 보냄). 또한 CSC에서 이러한 배정 제외 조치가 비행을 부추기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한 개별

비행 발생에 대해 한 학년에 연속 10일 이하의 배정 제외를 추가로 징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 학생의 행동이 장애의 징후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정되는 것에 상관 없이 자녀가 학교, 학교에서 제공한 교통 수단, 학교 건물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CSC가 결정한 AES에 배정
  - (a)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소지한 경우
  - (b) 고의로 불법 약물류를 소지, 복용 또는 판매하거나 규제 대상 약물의 판매를 요청한 경우
  - (c)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경우
- (3) 학칙에 위배되는 행동이 학생이 가진 장애의 징후가 아니라고 CSC에서 판명한 경우 CSC에서 결정한 AES, 기타 환경 또는 출석일 기준 10일 이상의 정학
- (4) 학교 담당자가 학생을 현재 교육 배정으로 복귀시키면 해당 학생 또는 타인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한 경우 즉결 심의회 이후

### 배정 제외 중 필수 서비스

- (1) 장애를 가진 학생이 한 학년 동안 모두 10일 이하로 학급 배정에서 제외된 경우 학교에서는 유사하게 제외되었으나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만 제공하면 됩니다.
- (2) 장애를 가진 학생이 10일 이상 학급 배정에서 제외된 경우, 학교 규정 위반을 불러 일으킨 행동이 학생의 장애 징후로 판명되지 않은 경우 또는 앞에서 언급한 "대안 교육 시설" 섹션의 단락 (2)에 명시된 특수 환경 중 하나에서 배정에서 제외된 학생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 징후로 판명된 경우 학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a) 학생이 다른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고 학생의 IEP에서 세운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FAPE에 따라 학생의 IEP에 정해진 교육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 (b) 재발하지 않도록 위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마련된 적절한 기능적 행동 평가, 행동 중재 서비스 및 수정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 (3) 장애를 가진 학생이 합해서 10일 이상 제외되었고 현재 제외 일수가 연속 10일 이하인 경우 CSC는 일련의 제외로 학생의 비행이 더욱 심화되는지 확인하여 제외 패턴이 배정 변경을 일으키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CSC가 제외 패턴이 배정 변경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 CSC는 학생이 다른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고 학생의 IEP에서 세운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CSC가 제외 패턴이 배정 변경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면 징후 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 징계 이의 제기

- (1) 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부모로, 배정 또는 징후 판명과 관련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학부모 또는 학생을 현재 배정으로 유지하면 다른 학생 또는 사람에게 상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학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 심의회 개최 직전에 DoHA(국방청문.항소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심의회 심리관보다 앞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즉결 심의회를 요청하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 학부모 또는 DoDEA 학제 시스템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학부모 또는 학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학생은 심의회 심리관의 결정이 보류된 동안 또는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시 AES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일방적 배정

학부모가 DoD를 통해 마련되지 않은 교육 옵션에 자녀를 등록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경우 일방적 배정이 발생합니다. DoDEA 학교가 DoD 비용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DoD 재정 지원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배정이 일방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학부모가 DoD를 통해 마련되지 않은 임의의 교육 옵션에 자녀를 일방적으로 등록 또는 배정한 경우 심의회 심리관이 DoDEA에 해당 배정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한 DoDEA는 학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비용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부모가 DoDEA에게 학부모의 일방적인 배정 결정에 대한 비용을 제공하라고 명령하는 심의회 심리관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DoDEA가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하지 못했음
- 학부모가 DoDEA 학교에서 자녀를 제적시키려는 의도를 최소한 업무일 기준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알렸음
- 학교가 학부모의 우려를 줄여주지 못했음
- 학부모의 일방적인 배정이 자녀에게 적절했음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방적 배정에 대해 학부모가 지불한 비용 상환을 심의회 심리관이 축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DoDEA가 학부모에게 자녀 재평가 의도와 재평가 목적을 통지했는데 학부모가 자녀가 DoDEA의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경우
- 학부모가 DoD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에 자녀를 등록하려는 의도와 우려 사항에 대해 업무일 기준 최소 10일 이전에 학교에 사전 서면 통지 없이 DoDEA 학교에서 자녀를 전학시킨 경우

DoDEA가 사립 프로그램 또는 홈스쿨 프로그램에 자녀의 배정을 승인한 경우 이 섹션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성인 연령

DoDEA에서 학생은 18번째 생일이 되면 성인 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 자녀가 서면으로 학부모가 계속해서 부모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동의하지 않거나, 귀 자녀가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법적으로 부적격하다고 간주된 경우 또는 DoDEA가 귀 자녀가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적격한 기간 동안 학생의 교육적 이익을 대변하도록 학부모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에게 부여된 권리는 18세가 되는 자녀에게 이전됩니다. 자녀가 성인 연령이 되더라도 징계 절차를 비롯하여 모든 특수한 교육 절차에 대한 통지가 학부모에게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 변호사/대리인에 대한 권리

학부모는 언제든지 장애가 있는 학생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식을 쌓거나 교육을 받은 개인 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대리인은 학부모와 동반할 수 있으며 학교 및/또는 심의회 심리관에게 학부모의 사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심의회에서 학부모 또는 학부모의 대리인은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반대 심문할 수 있습니다.

### 분쟁 해결

자녀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학생의 일반 및/또는 특수 교육 교사와 상담합니다. 학교 행정 담당자 역시 학교 수준에서 문제의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을 시도할 때에는 항상 학교의 가장 낮은 문제 해결 수준에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려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학부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CSC 회의, 중재 IEP 회의, 중재, 행정적 불만사항 신고 및/또는 적법한 이의제기 심의회를 비롯하여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CSC 회의

CSC 회의에는 자녀의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필요한 모든 구성원이 포함됩니다(예: 학교 행정 담당자, 학생의 담당 교사 및 서비스 제공업체). CSC 회의는 자녀의 프로그램 및 진행 상황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포럼입니다. CSC 회의의 구조는 모든 대화를 중재하고 문서화합니다. 또한 학부모의 우려 사항 및 의견 충돌 내용과 학부모 우려 사항에 대한 학교의 대응을 문서로 기록합니다. 회의록과 PWN은 학부모와 학교 양측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CSC 회의에서 문제 및/또는 우려 사항에 대해 상호 간에 쉽게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도출되지 않은 경우 학부모 또는 DoDEA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중재 IEP 회의 요청
- 학군 수준의 담당자와의 회의 요청
- 서면으로 중재 요청

- 서면으로 적법한 이의제기 심의회 요청

### 중재 IEP 회의

학부모가 자녀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해 CSC 회의 포럼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의견 충돌 또는 우려 사항을 갖고 있는 경우 학부모 또는 DoDEA가 중재 IEP 회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학교/학군 외부의 특수 교육을 받은 인사가 영입되어 학부모와 CSC가 문제 및 우려 사항에 대해 합의와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재 IEP 리더는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뛰어난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학부모와 학교가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을 대신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중재

학부모는 DoDEA가 학부모와 학교가 학생의 특수 교육 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의 중재자를 영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 절차는 자발적인 것으로, DoDEA가 지명한 교육을 받은 독립적 중재자가 수행하며 학부모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중재자는 판결을 내리거나 양측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중재 시 양측이 절차를 통제하고 일반적으로 양측이 완전히 의사를 밝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 중 논의되는 사항은 기밀이며 이후 진행되는 어떠한 적법한 이의제기 심의회 또는 민사 소송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 회의는 상호 간에 합의 가능한 시간 및 장소에서 진행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DoDM 1342.12에 의거해 양측이 재판소에서 강제할 수 있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적법한 이의제기 심의회 시작

학부모와 학교가 자녀의 신원 확인, 평가, 배정, IEP 또는 FAPE 제공과 관련한 의견 충돌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와 DoDEA가 이의제기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oHA(국방청문.항소국)의 국장에게 적법한 불만사항 처리(청원서)가 제출되면 독립적인 심의회 심리관이 지정됩니다. 심의회 심리관은 학부모와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적법한 이의제기 심의회를 소집하고 정보 교환, 심의회 준비를 관리하고 심의회를 실시합니다.

### 통지서/청원서/불만 신고서

심의회를 시작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청원서(불만 신고 통지서라고도 함)를 Director, DOHA, Post Office Box 3656, Arlington, Virginia 22203으로 우편 접수하거나 [specialedcomplaint@osdgc.osd.mil](mailto:specialedcomplaint@osdgc.osd.mil) 에 이메일로 접수하여 학생이 등록된 학교의 학교장에게 또는 DoD 학교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에 등록된 경우에는 DoDEA의 법률 자문위원회에게 청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DOHA가 청원서 서류를 접수하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DoDEA 특수 교육 사무소(DoDEA Headquarters, 4800 Mark Center Drive, Alexandria, VA 22350-1400)에도 청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DOHA 디렉터가 심의회 심리관의 역할을 수행할 DOHA 행정 재판관을 지명합니다.

## 제출 기한

학부모 또는 DoDEA는 이 불만 신고서의 근거가 되는 주장된 행위에 대해 학교에서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정한 이의제기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청을 저지 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적법한 이의제기 심의회를 요청하는 데 추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 불만사항의 근거가 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DoDEA가 허위 진술한 경우
- DoDEA가 IDEA의 파트 B와 이행 규정 DoDI/DoDM 1342.12에 따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 청원서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

청원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의 이름
- 자녀의 주소
- 자녀가 등교하고 있는 학교의 이름
- 파악된 각 문제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한 설명
-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 가입 또는 변경에 대한 제시 또는 거부에 대한 설명
- 파악된 각 문제와 관련된 사실

심의회 심리관 및 대상 학교가 학부모의 적법한 청원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학부모는 학교 담당자와의 의견 충돌의 성격, 학부모가 해당 의견 충돌이 자녀의 교육에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학부모가 요청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 및 결과를 확실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서면 통지서와 응답

- DoHA 디렉터가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DoDEA는 불만사항에서 제기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응답을 학부모에게 보내야 합니다.
- 학교가 학부모에게 PWN을 아직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응답에는 PWN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즉, 제안 또는 거부된 조치, CSC가 고려한 다른 옵션에 대한 설명, 해당 옵션이 거부된 이유, 각 평가, 절차에 대한 설명, CSC가 결정 기준으로 사용한 기록 또는 보고서와 제안 또는 거부와 관련된 요소에 대한 설명).

## 근거가 불충분한 청원서

IDEA가 요구하는 요소를 명시하지 못한 청원서를 보충하길 원하는 경우 응답자는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불충분한 청원에 대한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충분한 청원서에 대한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심의회 심리관은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들에게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알립니다.

## 해결 세션(회의)

IDEA 및 DoDM 1342.12에 따라 학부모는 자신이 제기한 적법한 불만사항 처리에 대해 학교측에 설명할 기회를 갖고 DoDEA는 불만사항을 해결할 기회를 갖습니다. DoHA 디렉터가 적법한 절차를 요구하는 학부모의 청원서(즉, 통지서/불만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15일 이내에(또는 즉결 심의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달력일 기준 7일 이내) 학교는 해결 세션을 개최해야 합니다. 이 세션은 학부모, 불만 신고서에서 파악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갖춘 CSC의 관련 구성원과 청원서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는 DoDEA의 대표 간에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학부모와 DoDEA가 해결 세션을 철회하거나 해결 세션 대신 중재에 참석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결 세션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교장이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이 지나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경우 심의회 심리관은 적법한 청원 절차를 소집해야 합니다.

- **불참:** DoDEA가 해결 회의를 소집하도록 제안하고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문서화한 후에도 학부모가 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해결 기간 종결 시(달력일 기준 30일, 즉결 심의회인 경우 달력일 기준 15일) DoDEA는 심의회 심리관이 학부모의 적법한 불만사항 처리를 해산하도록 요청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즉결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해결 세션에 참석하는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DoDEA는 학부모가 변호사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변호사를 배석시킬 수 있습니다.
- **집행 가능한 해결 합의:** 학부모가 DoDEA가 해결 세션에서 상호 합의를 도출하면 학부모와 DoDEA의 대표가 해당 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이는 구속력이 있는 합의이며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법정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명한 후라고 하더라도 각 당사자는 합의서에 서명한 후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이의제기 심의회 실시:** 적법한 이의제기 심의회를 시행하기 전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DoDM 1342.12를 참조하십시오.
- **증인 및 서류 증거의 공개:** 심의회가 열리기 전 업무일 기준 최소 5일 전에 당사자들은 심의회에서 각 당사자가 사용하려는 모든 문서 및 자료 목록을 교환해야 하며 여기에는 모든 평가 내용 및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각 당사자는 각 증인의 예상 증언에 대한 제안서와 함께 심의회에서 제시할 모든 증거물의 이름을 공개해야 합니다. 심의회가 열리기 전 업무일 기준 최소 10일 전에 각 당사자는 전문 자격의 명칭, 직함, 설명과 심의회에서 소환하려는 모든 전문가 증인의 제안된 증언을 요약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의회 심리관은 양 당사자 간에 공유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던 증거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분쟁 해결:** 분쟁은 심의회 심리관 앞에서 양 당사자가 각자의 케이스를 제시하는 공식적인 구두 심의회를 통해서 해결되거나 서면 기록을 토대로 결정을 내리도록

심의회 심리관에게 케이스를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공식적인 구두 심의회보다는 서면 기록을 토대로 한 결정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리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심의회 심리관이 요청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DoDEA가 학부모의 심의회 철회 요청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 **심의회 결정:** 심의회 심리관은 법적으로 충분한 청원서 또는 수정된 청원서 제출 이후, 심의회 심리관이 30일 간의 문제 해결 기간이 합의 없이 종결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를 접수한 이후, 양 당사자가 문제 해결 회의를 철회한 이후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중재 결정한 후 업무일 기준 50일 이내에 소견 및 결정을 발표합니다.
- **추가적 기록:** 이의제기 심의회의 종결 시, 학부모는 서면 또는 전자적 심의회 기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심의회 결정의 행정 항소

학부모 또는 DoDEA는 심의회 심리관의 결정을 접수한 후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DoHA 항소 위원회에 심의회 심리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의는 청원서 제출을 위해 위에 명시된 주소로 DoHA 항소 위원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이의제기 통지서를 제출한 후 업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DoHA 항소 위원회 의장에게 이의에 대한 문제 및 쟁점에 대한 진술문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진술문의 사본을 우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의 상대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DoHA 항소 위원회 의장에게 보낸 이의에 대한 문제 및 쟁점에 대한 진술문을 접수한 이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의 상대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답변의 사본을 우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DOHA 항소 위원회는 문제가 접수된 후 업무일 기준 45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 민사 소송

DoHA 항소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학부모나 DoDEA)는 적법한 이의제기 심의회(징계 절차에 관한 심의회 포함)의 주제가 된 문제에 관해 민사 소송을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적법한 관할 지방 법원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항소 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당 신청 및 기타 절차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학부모는 최소한 연방 민사 절차 규칙, 지방 법원 규칙을 참조하고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

미국 연방법원은 IDEA에서 승인한 모든 행정 조치나 법원 소송 절차에서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DoDEA는 본 지침서를 통해 학부모와 자녀에게 부여된 여러 권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추가로 얻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DoDEA는 DoDM 1342.12에 따라 귀 자녀에게 뛰어난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학부모님과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자녀의 담임 교사 및/또는 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